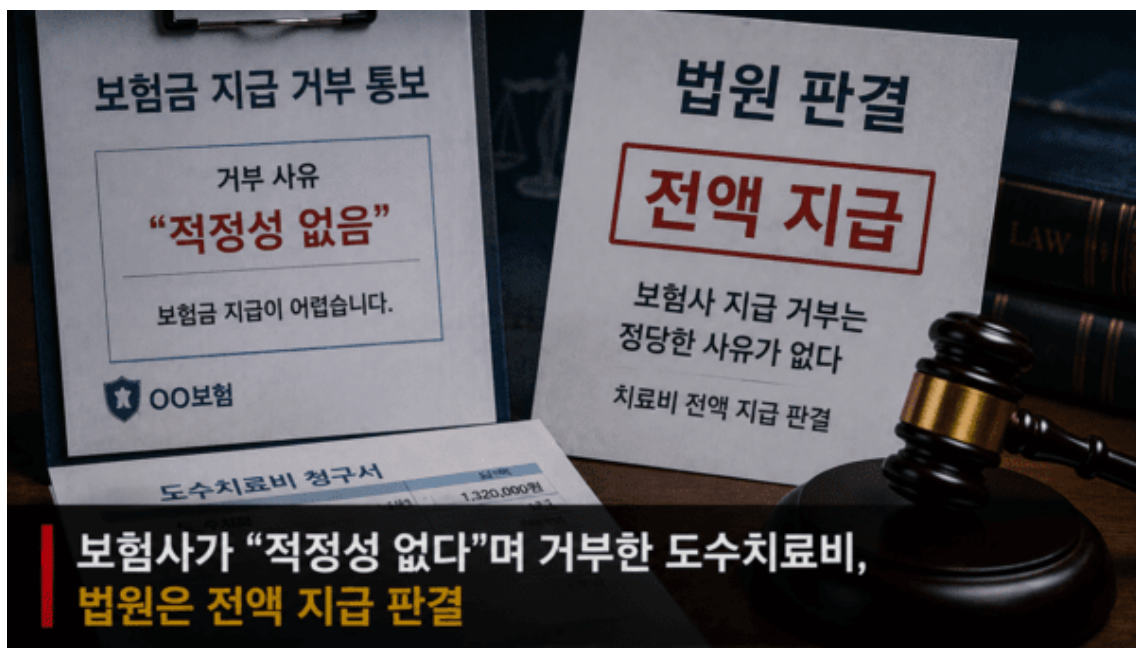


보험사가 "적정성 없다"며 거부한 도수치료비,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

고영준기자 입력 2026.08.31 13:48 댓글 11

서울중앙지법 "주치의 판단 존중, 약관에 횡수 제한 없다"...정부 고시의 획일적 기준과는 다른 잣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 고영준 기자)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고시 하나로 치료 횡수를 일률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원금 245만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현대해상이 부담하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A씨가 받은 도수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약관상 지급사유인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든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담당의사가 A씨의 내원 당시 극심한 통증과 도수치료 후 통증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이다. 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치료가 특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도수치료가 손을 이용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이나 인대를 자극하고 림프·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보존적 치료로서 중단 시점을 확정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 도수치료의 종류나 횡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였던 시기의 치료와 실손 약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7월 시행된 관리급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정부는 관리급여 전환과 함께 수가를 4만3850원으로 통일하고 주 2회, 연 15회로 횟수를 제한했다. 근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가 도수치료의 효과를 다른 재활치료 대비 크게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법원은 개별 환자의 통증 감소를 확인한 주치의 판단을 존중했다. 획일적 기준으로 치료 횟수를 정하는 방식과, 환자 상태에 따른 임상 판단을 인정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관리급여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관리급여 확대만으로 비급여 진료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불법·편법 영업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2020년 15조6000억원보다 39.7%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페이백 등 불법·편법 영업행태까지 근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까지 병행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급여를 도입한 배경과 확대 기준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국감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책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도수치료 청구 급감과 함께 개선되는 흐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약관에 없는 기준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가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손해율 개선분이 모두 정당한 지급 관리의 결과인지는 별도로 따져볼 대목이다.

정작 이 국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판단 주체의 혼선이다. 치료의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고,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정하며, 횟수는 정부 고시가 묶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그사이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물리치료사는 일자리를 잃는다. 국감이 따져야 할 것은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만이 아니다. 무엇이 적절한 치료인지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그 권한 배분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고영준기자 kyjseoulilbo@kakao.com

원문: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3>